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6. 23.
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. 5. 23. 고병준 의원 외 6인

나. 회부일자: 2023. 5. 25.

다. 상정일자: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(2023. 6. 12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: 한선미 의원

가. 제안이유

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어르신 복지증진이 주요시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내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, 어르신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장수축하금 지급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2) 장수축하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3) 장수축하금 신청안내, 신청방법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안 제6조)
- 4) 장수축하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5) 장수축하금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6)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3. 검토보고 (장흥용 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고병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어르신 복지증진이 주요시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내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장수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,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,
-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~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
 - 안 제3조~제4조까지는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규정 하였으며
 - 안 제5조~제6조까지는 신청안내 및 지급방법을,
 - 안 제7조~제8조까지는 지급제외 및 환수조치 사항을 규정 하는 등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.

-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보면,
최근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면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어르신 보건 및 복지 증진이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,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어르신들이 존경받고,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에 앞장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임.
- 이러한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, 장수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경로 호친사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고자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따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부칙 제2조와 관련 미지급 장수어르신에게도 축하금 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참고 자료

1. 관련법령

노인복지법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2. 향후 100세 어르신 증가 추이

(단위:천원)

구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
100세이상 인구수 (100세 도래자)	51명 (25명)	75명 (24명)	95명 (20명)	144명 (49명)	215명 (71명)
소요 비용	51,000	24,000	20,000	49,000	71,000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